



제 418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4472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2
2. 부칙	14
【참고1】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	19
【참고1】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 현황	20
【참고3】 민간자격 등록 현황	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제출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3.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가.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현행법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¹⁾ 개발·보급 및 교육과정²⁾ 개설·운영 관련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8조, 안 제28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현행	개정안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삭 제>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현행	개정안
등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등의 활용) ① ----- ----- ----- ----- ----- ---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 ② ----- ----- ----- ----- ----- 제17조제3호에 따른 ----- ----- -----. ③ ----- ----- ----- ----- ----- 제17조제4호에 따른 ----- -----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촌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기관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 동 인증제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부터 인증기관과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인증제 폐지에 대한 인증기관의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다고 설명함.

다. 검토의견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도농교류·농어촌개발 전문인력’과 ‘농어촌 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양성을 목적으로,

도농교류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과 및 교육과정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07년 「도농교류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시행되었음.

법 제정 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2년 동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양되어 현재는 시·도지사가 인증 권한을 가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도 개요】

구분		교육수료자 수행업무	유효기간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협력사업을 기획·운영 · 도농 교류 프로그램 개발, 체험 활동 운영, 도시와 농촌의 자원 연계 등	3년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기획·운영 ·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생태관광 개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외부자원 유치	3년
도농교류 교육과정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농어촌 지역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농어촌 방문객의 지역특색 체험 조력	3년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농어촌 방문객에게 지역 특색과 문화, 자연환경 소개 · 마을 역사, 전통, 지역 특산물, 생태환경, 생활 방식 안내	3년
마크/표시 (예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 10. 28. 제출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이나,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 모두 의무사항은 아님(임의인증).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인증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와 미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민간자격³⁾을 취득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민간자격 등록 현황('24. 8. 기준)】

구분	종류	예시
농어촌체험지도사 관련 유사 자격	53종	농어촌체험관광지도사, 농촌체험지도사, 농촌체험학습지도사 등
농어촌마을해설가 관련 유사 자격	6종	농어촌체험관광해설사, 농어촌마을해설사, 마을해설사 등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 10. 28. 제출

또한 인증기관에 대한 별도의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바,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신규 신청 및 유지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인증실적】

구분	'20	'21	'22	'23	'24.9.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0	0	0	0	0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8	8	10	8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4	2	3	3	1
계	12	10	13	11	4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 10. 28. 제출

한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인증제도 등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적합성평가의 존속·개선·통합·폐지 여부 등을 중랑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규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제도에 대한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였음.

【적합성평가 종합검토 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동 제도는 폐지가 적절
- (지자체 중심 운영) 동 제도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임의제도로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심사 및 인증제도 운영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음
- (효율적 운영 필요) 교육과정인증제도에서 표준화된 인증기준 적용을 요구함에 따라 교육의 창의성 저해 우려가 있으며,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음. 교육 수요 등 시장 반응을 교육과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효율성 보장이 필요함. 또한 농어촌과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은 필요하나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은 필요성이 낮음
-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폐지) 동 제도를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하여 법정 인증제도로 운영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제도는 폐지가 적절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 10. 28. 제출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도농교류 인증제도 폐지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인증제 폐지에 따라 종전에 인증제로 수행되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운영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개정내용 요약】

현행		내용	개정안	
조문	수행주체		수행주체	조문
제17조 제1항	시·도지사 수행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도지사 수행	안 제17조 제5호
제17조 제2항제1호	민간 수행 (시·도지사 인증)	도농교류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안 제17조 제1호
제17조 제2항제1호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안 제17조 제2호
제17조 제2항제2호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개설·운영		안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2항제3호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개설·운영		안 제17조 제4호

유사한 취지로 '18. 12.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 역시 폐지된 바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4)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위탁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 폐지 사례】

「관광진흥법」 (법률 제10556호, 2011. 4. 5,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4년 9월 현재 인증 유지기관이 4개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인증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를 두는 이유는 교육프로그램 배포기관 또는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질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수강생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해당 과정 이수자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런 취지에서 다른 법률에도 유사한 인증제를 두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유사 인증제 사례】

법적근거		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인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질적 최소수준을 담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3년)을 두고 있어 인증·재인증을 통해 교육기관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은 집행점검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적 사후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결과와 인증수요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동 인증제를 폐지하더라도,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면서, 인증 유효기간과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시행일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6. 1. 1.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제1조).

이는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인증 만료 일자를 고려하고 (표 참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현행 인증기관과 잠재적 인증 수요기관이 인증제 폐지 가능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인증기관 현황】

(’24.10.기준)

구분	인증기관	기관·단체명	만료일자	비고
체험지도사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27.9.2.	’18년 최초인증 3회 재인증
	전라남도	우리농촌협동조합	‘25.8.3.	’16년 최초인증 4회 재인증
	경상남도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24.11.28.	’18년 최초인증 3회 재인증
마을해설가	경상남도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24.11.28.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4. 10. 28. 제출

이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 진행과정에 따라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인증 유효기간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안은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25. 12. 31에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또한 법 시행일 당시,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개정 법률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②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 중에 있던 사람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교육을 계속 이수하는 경우는 개정 법률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3조).

그런데, 인증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의 일반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① 종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방식과 ② 법률 시행일에 일괄적으로 잔여 유효기간을 모두 만료시키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인증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예시】

구분	예시
종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방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9조(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법률 시행일에 유효기간을 만료시키는 방식	「관광진흥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u>경과조치</u>)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의6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과 같은 경과조치를 둔 것은 인증제 폐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유지된다는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경과조치로 인증에 따라 누리던 공신력 등 유·무형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26. 1. 1.을 기준으로 현재 인증기관 중 인증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관은 1개소에 불과하고, 해당 기관은 인증제 폐지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였음.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과태료 규정이 폐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됨.

※ 유사입법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이에 개정안은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안 부칙 제4조).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1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9.30>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10조 관련)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 분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가.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도농교류 관련법령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2) 마을경영	
	3) 지역자원발굴·활용	
	4) 홍보·마케팅	
	5)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나.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10시간 이상
	2)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3) 농어촌지역 자원의 가치 창출	
	4)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	
	5)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6) 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	
	7) 혁신과 리더십	
	8) 농어촌지역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	
	9)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교 육 시 설
가.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농어촌체험교육 교재개발		
다.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라. 안전교육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교 육 시 설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마을해설기법		
다.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라.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참고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 현황

☐ 최근 5년간 인증실적

구 분	'20	'21	'22	'23	'24.9.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0	0	0	0	0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8	8	10	8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4	2	3	3	1
계	12	10	13	11	4*

※ 체험지도사(경기 1, 전남 1, 경남 1), 마을해설가(경남 1)

☐ 체험지도사 인증현황

인증기관	기관·단체명	만료일자	비고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27.9.2.	재인증
전라남도	우리농촌협동조합	'25.8.3.	재인증
경상남도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24.11.28.	재인증

☐ 마을해설가 인증현황

인증기관	기관·단체명	만료일자	비고
경상남도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24.11.28.	재인증

☐ 인증 관련 지원 예산

- 별도의 국비 지원 사업은 없으며, 지자체에서도 인증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행정업무)

*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도사 및 해설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추진

참고 3

민간자격 등록 현황

□ 체험지도사 관련 ('24. 9. 2. 기준)

등록확정일	등록번호	자격명칭	신청기관
2011-07-13	2011-0421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2012-12-24	2012-1106	농어촌체험지도사	사단법인 동북아도농관광연구원
2013-06-14	2013-0145	체험아동요리지도사	FC체험학습지도자협회
2015-06-18	2015-002731	푸드놀이체험지도사	바른식문화개발원
2015-08-13	2015-003824	우리농산물체험지도사	사단법인칼라클레이문화예술협회
2015-08-13	2015-004158	궁중음식체험지도사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
2015-09-16	2015-004807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2015-11-20	2015-005943	아동요리체험지도사	매그놀리아키친
2016-02-19	2016-000676	직업체험요리지도사	요리노리연구소
2016-05-26	2016-002296	반려동물체험교육지도사	(사)한국기술경제연구원
2016-12-15	2016-005874	쿠킹체험지도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원협회
2017-04-03	2017-001389	동물체험학습지도사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
2017-05-16	2017-002215	새싹산양삼체험지도사	한국도시농업진흥협회
2017-05-16	2017-002235	농촌체험힐링푸드지도사	주식회사 지앤비 (G&B)
2017-06-01	2017-002600	농촌체험지도사	(주)한국식품정보원
2017-06-29	2017-003300	농촌체험플래너	(사)한국능률협회
2017-07-14	2017-003608	차문화체험강사	한국교육사회적협동조합
2017-10-15	2017-004985	농촌체험학습지도사	한국글로벌인재개발원
2017-11-28	2017-005797	커피농장체험지도사	(주) 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
2018-10-24	2018-004842	압화체험강사	사단법인 한국화훼장식협회
2019-02-12	2019-000790	힐링분경체험지도사	농업회사법인 계수나무(주)
2019-03-13	2019-001294	버섯체험지도사	도시농업능력개발원
2019-04-24	2019-002475	스칸디아모스체험전문강사	소담예술공예협회
2019-05-31	2019-002900	농어촌체험지도사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2019-09-26	2019-005554	전통발효식품체험지도사	한국전통발효식품체험학습교육협회
2020-05-28	2020-002726	푸드카빙체험지도사	한국푸드카빙요리협회
2020-09-02	2020-004342	새싹삼체험지도사	농업회사법인쇠평자연농원주식회사
2020-09-02	2020-004346	발효효소체험지도사	농업회사법인쇠평자연농원주식회사
2020-09-02	2020-004348	버섯체험지도사	농업회사법인쇠평자연농원주식회사
2020-12-15	2020-006033	농어촌체험지도사	주식회사 농촌엔정
2020-12-15	2020-006062	푸드아트체험지도사	한국실용문화연구협회
2021-01-21	2021-000503	발효효소체험지도사	한국도시농업전문가교육협회
2021-01-21	2021-000506	새싹삼체험지도사	한국도시농업전문가교육협회
2022-01-20	2022-000549	압화체험지도사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술인협회
2022-03-22	2022-001682	농가카페메뉴체험지도사	정푸드컨설팅
2022-08-09	2022-003899	베이킹체험지도사	한국자격평가진흥원

등록확정일	등록번호	자격명칭	신청기관
2022-10-22	2022-004861	농촌체험관광지도사	한국JJ인재개발진흥원
2023-01-04	2023-000377	원예체험지도사	한국치유원예협회
2023-01-04	2023-000395	농촌체험지도사	해피트리 교육원
2023-02-01	2023-000759	농촌체험지도사	유한회사새벽이앤씨
2023-04-13	2023-002149	농촌체험학습지도사	한국자격인증교육원
2023-05-12	2023-002583	바리스타진로체험강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홍보리
2023-05-12	2023-002645	약초체험지도사	세계인재육성교육개발원
2023-05-12	2023-002665	농어촌체험지도사	유한회사 마을을담는사람들
2023-06-12	2023-003164	농촌체험관광지도사	별품꽃(주)
2023-07-13	2023-003683	발효음식체험지도사	남악평생교육원
2023-09-01	2023-004322	농어촌체험관광지도사	한국JJ인재개발진흥원
2023-10-30	2023-005193	농촌체험관광지도사	사단법인문화사업진흥회
2023-10-30	2023-005200	농어촌체험지도사	주식회사 마을누리
2023-12-08	2023-005808	허브·원예힐링체험지도사	케이허브체험연구소
2023-12-08	2023-005840	향토음식체험지도사	글마루평생교육원주식회사
2024-02-15	2024-000664	남도음식체험코디네이터	가치경제협동조합
2024-04-18	2024-001706	전통장체험지도사	전통장발효연구원

□ 마을해설사 관련 ('24. 9. 2. 기준)

등록확정일	등록번호	자격명칭	신청기관
2018-02-14	2018-000559	마을사업리더전문가	한국 N&S교육개발원
2019-05-31	2019-002899	농어촌마을해설가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2020-12-15	2020-006034	농어촌마을해설사	주식회사 농촌엔정
2023-02-01	2023-000761	마을해설사	유한회사새벽이앤씨
2023-06-12	2023-003230	마을카페코디네이터	주식회사 디마르
2023-10-30	2023-005199	농어촌마을해설사	주식회사 마을누리